

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(등기)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7. 10.

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장



1. 공 고 명: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6. 7. 10. ~ 2026. 7. 30.(20일간)
3. 공시송달 대상

대 상 자		장애 유형	반송일	반송사유
성 명	주 소			
김*훈	울산광역시 중구 함월5길 8	** / ***	2026.7.8.(등기우편)	폐문부재

4. 공고방법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5.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
 - 가. 제 출 처: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행정복지센터
 - 나. 제출기한: 2026년 8월 2일까지
 - 다. 주 소: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34
 - 라. 문의사항: 052-290-4613
 - 마. 구비서류: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, 소견서, 검사결과지, 진료기록지

※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6. 유의사항: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,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.